

##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2005· 9· 21 조례 제 586호  
개정 2006· 11· 16 조례 제 640호  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  
일부개정 2013· 5· 6 조례 제 978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3· 8· 7 조례 제 990호  
일부개정 2013· 10· 1 조례 제1001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5· 11· 11 조례 제1178호  
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8· 3· 28 조례 제1378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9· 1· 1 조례 제146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1· 6· 25 조례 제1710호  
일부개정 2023· 3· 6 조례 제1900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3· 11· 1 조례 제201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· 8· 7, 2015· 11· 11, 2023· 11· 1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· 6· 25, 2023· 11· 1>

1. “용역”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조사, 구매, 조달, 시험, 감리, 시운전, 평가, 자문, 지도,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학술연구용역”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, 제도개선,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.
3. “기술용역”이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제3호,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

호,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,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5호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.

4. “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”이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중앙부처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·11·11]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른 학술용역, 기술용역으로써 이천시와 이천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1·6·25, 2023·11·1>

1. 예산편성목 “시설비 및 부대비”로 추진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
2. 전액 국·도비(특별교부세, 특별조정교부금 포함)로 시행하는 용역
3.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
4.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과 3천만 원 이하인 기술용역
5. 전산개발, 임상연구, 단순 설문조사
6. 그 밖에 재해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

[전문개정 2015·11·11]

**제4조(용역사업 심의위원회 구성)** ① 용역사업을 심의·관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후단신설 2021·6·25>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3·11·1>

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안전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·3·28, 2019·1·1,

2023. 3. 6, 2023. 11. 1>

1. 이천시의회 의원

2.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.

[전문개정 2015. 11. 11]

[제목개정 2023. 11. 1]

#### 제4조의2 삭제 <2023. 11. 1>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1. 1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그리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3. 11. 1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 11. 1>

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3. 8. 7, 2015. 11. 11, 2023. 11. 1>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3. 11. 1]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중전 제7조에서 이동 2023. 11. 1]

**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, 유사·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
2. 용역 사업계획, 수행기간, 과업내용, 용역비 등의 적정성
3.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
4.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5·11·11]

[중전 제5조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8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8·7>

②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,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나 직무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·8·7>

③ 위촉 위원이 결원일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3·8·7>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,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
2.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
3.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[본조신설 2015·11·11]

[중전 제6조의2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9조(심의요청)** 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·6·25>

1.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
2. 용역비 산출내역, 용역의 주요 내용
3. 기존 용역과의 유사·중복성
4. 각종 중·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

5.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

6.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

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용역과제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1·6·25>

[전문개정 2015·11·11]

**제9조의2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[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9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3.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

4.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
[본조신설 2015·11·11]

[중전 제6조의3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9조의4(용역실명제)** ① 용역 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

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주무관으로 한다. 다만,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
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
3.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
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15·11·11]

[중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9조의5(용역결과의 공개)**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,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명시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1·6·25]

[중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9조의6(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)**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·6·25>

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

주는 의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·6·25>

⑤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·6·25>

[본조신설 2015·11·11]

[중전 제9조의4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10조(회의록)**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[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11조(수당 및 여비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8·7>

[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·11·1]

**제12조(비밀엄수)**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[본조신설 2023·11·1]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·8·7>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·11·16 조례 제64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제2조 생략

부칙 <2013·5·6 조례 제9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3항 중 “시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및 ⑦ 생략

부칙 <2013·8·7 조례 제9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·10·1 조례 제1001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<2015·11·11 조례 제1178호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각 호외 부분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지역개발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** 생략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21·6·25 조례 제171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23·11·1 조례 제201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